

<의안번호 제2007 - 16호>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제4차)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 6.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 6. 19.

2. 제안이유

- 07년도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건기관이 협소하고, 노후된 시설을 신축하여 진료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우리 군과 거창화강석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거창 관문 제작·설치를 통한 대외 경쟁력 향상 및 인지도 제고와 군민의 자긍심 고취

3.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m²/천원)

재산명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및지목	수량(m ²)	예정금액	비고
북상보건지소	당초	소계	북상면 갈계리 일원	계		577,608	금액 : 증170,000 (29.4%) 면적 : 증478m ² (48%)
		토지		토지	990	60,000	
		건물		건물	335	517,608	
	변경	소계	북상면 갈계리 1433-4,1390-3	계		747,608	
		토지		토지	1,468	110,000	
		건물		건물	344	637,608	

구송 보건 진료소	당초	소계	고제면 봉산리 일원	계		245,753	금액 : 증35,000 (14.2%) 면적 : 증305m ² (37.1%)
		토지		토지	820	38,000	
		건물		건물	116	207,753	
	변경	소계	고제면 봉산리 587-4, 587-13	계		280,753	
		토지		토지	1,125	24,000	
		건물		건물	139	256,753	
가조 보건 지소	당초	소계	가조면 마상리 345-3	계		527,608	금액 : 증173,000 (32.8%) 면적 : 증330m ²
		토지		토지			
		건물		건물	351	527,608	
	변경	소계	가조면 마상리 342-7	계		700,608	
		토지		토지	330	133,000	
		건물		건물	344	567,608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 : 면적 또는 가격 30%이상 증감시 재의결대상

(단위 : 천원)

재산명	재산 종별	재산 소재지	물건및 지 목	수량(m ²)	예정금액	비고
거창화강석 관문 조형물	소계	거창읍 대평리 검문소 일원	계		1,000,000	
	조형물		화강석 조형물	22m(L) × 10m(H)	1,000,000	

○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m²/천원)

구 분	재산 종별	재산소재지	물건및 지 목	면 적	예정금액 (추정가액)	비 고
처 분		해 당 없 음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

○ 예산조치 : 군비부담금 제1회 추경 편성

5. 검토의견

- 동 사안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것으로써 보건소 소관 3건(북상보건지소·구송보건진료소·가조보건지소의 이전신축)과 경제과 소관 거창화강석 관문 조형물 설치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의안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그 대상을 간단히 살펴보면.
 - 1건의 예정가격이 시군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인 취득(처분 및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설치 포함)하는 경우이며,
 - 토지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일 때
 -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먼저 거창군 보건소의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의 전반적 신축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면
 - 보건지소의 시설개선 현황은 총 11개소중 개선완료가 1개소(고제), 2006년도에 확정되어 추진중 1개소(가조), 2007년도에 확정되어 추진중 2개소(웅양, 북상), 앞으로 연차별 시설개선 추진계획인 7개소(신원, 마리, 주상, 가북, 위천, 남상, 남하)가 있으며
 - 보건진료소의 시설개선 현황은 총 18개소중 개선완료

- 5개소(거기, 고향, 용암, 율리, 강천), 2006년도에 확정되어 추진중 1개소(아주), 2007년도에 확정되어 추진중 1개소(구송), 앞으로 연차별 시설개선 추진계획인 11개소(양지, 개명, 소정, 월성, 진목, 중촌, 모진, 임불, 도리, 지산, 대현)가 있음.
- 이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순위선정 및 배점 기준은 4개의 변수항목(건물노후화 정도: 50%, 주민이용도인 진료실적: 30%, 위치, 진료 및 주거환경: 10%, 냉난방 및 설비 등 문제점: 10%)에 비율을 두고 각각 점수를 배정하여 선정순위 결과를 지난 2006년 7월 14일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 이를 순서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었음
 - 이에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에 대한 취득재산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북상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 북상면 보건지소는 1982년 건립되어 24년이 경과된 건물로써 건물 벽면 균열 및 누수 등의 사유로 이전신축이 필요하여 2006. 11. 14. 제133회 임시회에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미 승인 받았으나, 관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사안임.
- 당초 토지는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아 북상면 갈계리 일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이번에 대상지가 북상면 갈계리 1390-3, 1433-4 번지로 확정됨에 따라 면적이 48.3%(당초 990m² ⇒ 변경1,468m²) 증가 되고, 예정가격이 29.4%(당초 577,608천원 ⇒ 변경 747,608천원)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총 소요사업 747,608천원(국비 318,405천원, 도비 159,203천원 군비 270,000천원)산출에 대하여 살펴보면
 - 재정자립도 15%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전액 국·도비 보조로 지원하고 있으며,
 - 보건지소 1개소의 사업지원내역은 477,608천원(국비 318,405+도비 159,203) 이며, 나머지 추가소요 사업비 270,000천원은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면적증가에 따른 추가소요분 군비 부족액 170,000천원을 2007년 1회 추경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② 고제면 구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 고제면 구송 보건진료소는 사업규모와 예정가격이 시군의 경우 5억원 이상에 해당하거나 토지의 면적이 1,000m²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사항이 아니였으나 사업대상지 면적이 당초 820m²→ 1,125m²로 확정되어 관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사안임.

- 동 사업의 규모는 토지취득이 1,125m², 건물신축이 139m²로서 총 소요사업비 280,753천원(국비 110,502천원, 도비 55,251천원, 군비 115,000천원) 중 군비 부족액 35,000천원을 2007년 1회 추경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 현재 협의중인 부지는 다른 부지를 선정하여 매입할 경우와 비교할 때 진입로 및 주변에 석축쌓기 등의 사업비 35,000천원 정도가 추가소요될 것으로 검토되는 바,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3] 가조면 보건지소 신축

- 가조면 보건지소는 1990년 건립되어 운영해 오고 있으나 천정누수 등 건물이 노후되고 건물협소 등 진료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유로 2006. 8. 30일 제131회 임시회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변경안을 승인 받았으나, 관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사안임
- 당초 대상지는 현부지를 철거하고 보건복지부의 2007년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지침의 표준시설 면적(336m²)에 해당되는 건축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건폐율(60%)이 맞지 않아 건축하지 못하고 대상부지를 물색 하던중 인근부지를 매입할 수 있어 가조면

마상리 342-7, 342-8번지로 확정됨에 따라 면적(330m²)이 추가(마상리 342-7번지)되고, 예정가격(당초 567,608천원 ⇒ 변경 700,608천원)이 32.8%증가되었으며,

- 가조 보건지소는 총 소요사업비 700,608천원 중 국비 318,405천원, 도비 159,203천원 군비 223,000천원 중 군비 부족액 173,000천원을 2007년 1회 추경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상기의 사업들이 완료되면 열악한 진료환경 및 공간 등의 협소로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시설확장·개선 등을 통하여 보건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됨.

④ 거창 화강석 조형물 관문 설치

- 2007년 5월 29일 주례회의시 보고된 계획에 따라 거창화강석 조형물 관문 설치를 위하여 관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 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있어 1건당 예정가격(건물의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임.
- 동 사안이 제출된 배경은 도시건축과에서 추진중인 교통의 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4억원(균특2억, 군비2억)으로 상징탑 설치 계획을 추진하던 중
 - 2006. 11. 30일 2006년도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총무위원장으로부터 관문 설치에 대한 제안을 받고,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 2007년 3월 21일 지역혁신협의회에 안을 상정하여 관문설치에 대한 방침안을 결정 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의 규모는 길이 22m, 높이 10m의 규모로서 총 소요사업비 1,000,000천원(국비 300,000천원, 군특 220,000천원 군비 480,000천원) 중 군비 부족액 280,000천원을 2007년 1회 추경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본사업이 완료되면 거창화강석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대외 경쟁력 향상 및 인지도 제고와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거창지역 화강석산업 발전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군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거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화강석 조형물로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검토되었으나,

- 동 사업의 설치 예정지는 88고속국도 확장사업의 영향권에 있으며 거창 IC 예정지가 미확정 상태에 있으므로 향후 주 동선의 이동 경로에 대하여 88고속국도 관리청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위치 선정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0.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4.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